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20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6. 13.
3. 회 부 일 : 2025. 0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제헌절</u> : 7월 17일 3. ~ 5. (생략)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u>헌법의 날</u> ----- 3.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로, 현행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헌절’이라는 명칭이 국민에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이 헌법 제정일의 의의와 현대적 가치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하여 헌법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미래 세대의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교육 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헌절’이라는 명칭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70여 년간 국민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온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변경이 국민 생활과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혼선 예방과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 대외적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